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20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△△△
기 타	◇◇◇
기 타	☆☆☆

2. 조치내용

□ 수사기관 통보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

○ △△△, ◇◇◇, ☆☆☆는 공모하여 '**.**.**. ~'**.**.**. 기간 중 ♤♤♤ 등 **인의 API KEY를 부당대여 받아 ○○○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

- 혐의자들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'**.**.**. **:**:**부터 **.**. **:**:**까지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

- '**.**.**. **:**:**부터 **:**:**까지 ♤♤♤ 등 **인의 계정 간에 통정매매 및 고가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며 이용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함

[호가관여율 : **.**%, 부당이득 : *********원]

나. 근거법규

□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제3항,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